

의안번호	2220408
의 퇴 인	권영세 의원
회 답 일	2026. 8. 10.
추계번호	26F39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 적용요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적용대상: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9.12.31.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2. 상세사유

- 개정안으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21조의29)
- 사업재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의미하며, 사업재편계획에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어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후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

※ 사업재편제도는 세제 지원 외에도 R&D, 금융,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승인 기업에 제공하고 있음¹⁾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9년 12월 31일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법인세 감면실적: 최근 5년(2021~2025년) 감면실적 없음

－ 동기간 감면실적이 낮은 것은 사업재편 승인유형이 대부분 신산업 진출에 해당하여,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활용도가 낮은 영향으로 보임

[표 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법인세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계	0	0	0	0	0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표 3]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연도별 승인유형

(단위: 개)

승인유형	승인연도		기업규모			합계
	2016~2019	2020~2024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계	109	421	11	83	436	530
－과잉공급 해소	109	6	7	12	96	115
－신산업 진출	0	404	4	71	329	404
－기타	0	11	0	0	11	11

자료: 주지환(2025)²⁾

IV. 부대의견

□ 없음

1) 산업통상부, 「사업재편 지원제도 활용 가이드」, 2026

2) 주지환,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산업경제이슈」 187호, 산업연구원, 2025.7.14.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